

◎기상청공고 제2024-146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기상청장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및 인용 제명을 현행화하고, 기상박물관 운영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직원윤리를 규정하는 한편, 박물관 운영 위원회 운영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소장품 수집으로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용어 및 인용 법률의 제명 현행화
나. 운영 위원회 운영 관련 구체적 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5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다. 소장품 수집으로 이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안 제22조 및 제23조)
라. 수장고 관리 강화를 위한 출입 관련 사항 개선(안 제41조)
마. 박물관 운영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직원윤리 규정(안 제5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jmkim13@korea.kr

– 팩스: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kma>)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